

# CHAPTER 4



2026학년도 수능



## [Comment]

이제 지금까지 배운 독해 방법을 그대로 직전 수능에 적용해볼 것이다. 비독교의 방식으로 직전 수능을 뚫어보자. 학습 방법은 이전과 같다.

## [학습 방법]

STEP 1 | 먼저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고 해설지의 [있는 그대로의 시험지] 살펴보기

STEP 2 | 해설지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기

⇒ 지문 읽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 문제의 출제 의도 파악에 집중하기



## STEP 01. 직접 풀어보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①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②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③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에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④ 설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⑥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7.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사이어야 한다.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

9. 문맥상 ⑧~⑨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⑧ : 이루는
- ② ⑨ : 헤아려
- ③ ⑩ : 깨뜨리고
- ④ ⑪ : 이루어지려면
- ⑤ ⑫ : 바로잡고

## STEP 02. 있는 그대로의 시험지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①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②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③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 to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 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④ 설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⑥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7.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사이어야 한다.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

9. 문맥상 ⑧~⑨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⑧ : 이루는
- ② ⑨ : 헤아려
- ③ ⑩ : 깨뜨리고
- ④ ⑪ : 이루어지려면
- ⑤ ⑫ : 바로잡고

## STEP 03. 이런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한다.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 첫 문장부터 용어 개념 정의했다. 법 해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1문단에서 제시된 용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 법 해석의 정의 안에서 또 성문법의 정의가 수식어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경우, 성문법의 정의를 살려서 법 해석을 이해해야 한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법 해석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당연하지), 성문법을 ①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되어야 한다. (법 해석은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다.)

이러한 [문리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하는 것을 ’문리 해석‘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라는 거 잘 알겠어. 근데 이렇게 1문단이 끝났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일단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정보를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2문단에 붙여봐야겠다.

그러나 문리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법 해석이 어려우면),

→ 어! 이거 문제점이다! 위에서 확보했던 문리해석의 정의를 입혀서 읽어보면,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하는 방식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S1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②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바로 해결책이 나왔네! 법조문의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으니까, 사용된 맥락과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해결책이 제시됐어.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 이어서 그 해결책의 예시도 준다. 예시는 항상 일반적인 설명에 붙여서, 그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된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 담보라는 단어의 일상적 의미네. 문리해석을 하려면 이 의미를 사용해서 그 법조문을 이해해야겠군.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이게 앞서 말했던 해결책이잖아!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체계적 해석’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2문단이 끝났는데, 이제 성문법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의 체계적 해석이 일어나는지 확보하려 들어가야겠다.

[1문단 독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문리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2문단 독해]

문제점 제시 : 문리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결책 :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or 입법 과정을 보는 역사적 해석을 사용

예시 : 담보

- 일상적 의미 : 맡아서 보증함
- if 성문법 조문, 그 체계적 해석 사용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성문법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의 체계적 해석이 일어나는지 확보하려 들어 가야겠다.” 2문단에서 이 생각을 하고 넘어왔다면, 이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바로 반응이 올 것이다. ‘유상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담보를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체계적 해석’이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 근데 우리가 유상 계약이 뭔지 모르니까 유상 계약이 뭔지를 준다. 이해하고, 담보의 정의에 붙여서 읽으면 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 매매 계약으로 그 범위를 좁혔다. 담보라는 예시 안에서, 또 특정 상황(매매 계약의 맥락에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예시를 준다.

→ 문장에 수식어로 주어진 조건이 복잡하다. 잘 끊고, 수식어는 잘 묶어야 한다.

“상황 :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  
 결과 :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의 정의가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조건 :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되었어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②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담보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앞 문장에 붙여야 한다.

→ 법 지문에서 항상 등장하는 원칙-예외다.

원칙적인 담보 책임 : 손해 배상 (계약 후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 하는 부분을 배상)

예외 :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수 없는 경우 → 계약 파기 & 대금 환불

이렇게 정리된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또 예외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의 내용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 애초에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1.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던 경우
2.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 수 있었던 경우

를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TIP ) 무작정 예외라고 같은 범주로 뭉개버리면 안 된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 [1문단 독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향문리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 [2문단 독해]

문제점 제시 : 문리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결책 :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or 입법 과정을 보는 역사적 해석을 사용

예시 : 담보

- 일상적 의미 : 맡아서 보증함
- if 성문법 조문, 그 체계적 해석 사용

### [3문단 독해]

담보의 체계적 해석 예시

#### 1. 유상 계약의 맥락

- 담보 :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 in 매매 계약
  - if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 못한다면, →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함.
  - └ 손해 배상이 원칙
  - └ 예외 :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을 수 없는 경우, 계약 파기 & 대금 환불

└ 예외 :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 인정 X

###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니, 범주가 교체되었다. 이전 문단에서는 담보의 '유상 계약 맥락'에서의 체계적 해석을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담보의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의 체계적 해석을 다룬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 바로 예시가 제시된다. 담보 물권이 뭔지 이제부터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담보의 정의가 나올 때 반응해주면 된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황 설정] '채권의 실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안 될 때의 대안(강제 집행)을 설명하고 있다. 담보가 '채권 실현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이 강제 집행 과정에서 담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어떻게 좋은지 비교해봐야겠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 [절차 구체화] 강제 집행이 구체적으로는 '물건 팔아서(경매) 그 돈을 나눠 갖는(배당) 것'이구나. 그럼 '배당'을 받을 때가 채권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칙(문제점) 제시]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가 문제구나. '비례해서 받는다'는 건,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면 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채권 실현 불확실)는 뜻이네. 이게 담보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 [예외(해결책/담보의 의미) 확인] 여기가 핵심이다. '그러나' 뒤에 담보의 진짜 기능이 나왔다. 남들은 나눠서 조금밖에 못 받을 때, 담보가 있으면 '먼저(우선순위)' 다챙겨갈 수 있구나. 이렇게 순서를 앞당김으로써 첫 문장에서 말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거였네.

###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 [1-2문단 독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한 문리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점 제시 : 문리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결책 :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or 입법 과정을 보는 역사적 해석을 사용

예시 : 담보

- 일상적 의미 : 맙아서 보증함
- if 성문법 조문, 그 체계적 해석 사용

### [3문단 독해]

담보의 체계적 해석 예시

#### 1. 유상 계약의 맥락

- 담보 :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 in 매매 계약

- if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 못한다면,

→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함.

└ 손해 배상이 원칙

└ 예외 :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파기 & 대금 환불

└ 예외 :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 인정 X

### [4문단 독해]

담보의 체계적 해석 예시

#### 2. 채권과 관련된 맥락

- 담보 :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ex) 담보 물권

- 전제 상황 : 채무 불이행과 강제 집행

→ 채무자가 지불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함.

→ 과정 : 부동산 입류 → 경매 → 경매 대금 확보 → 채권자들에게 배당

- 담보의 핵심 기능 : '우선 변제권'

→ 원칙(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들) :

- 비례 배당 (인분 배당) : 각자 빌려준 돈의 액수에 비례하여 나눠 갖는다.

- 결과 : 경매 대금이 부족하면 빌려준 돈을 다 못 받을 위험이 크다.

→ 예외(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 : 우선 변제 결과 : 남들이 돈을 못 받더라도, 담보권자는 자신의 돈을 확실하게 회수(실현)할 수 있음.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 보증의 정의다. 1문단에서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확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 어? '담보' 나왔다. (가)에서 담보는 두 가지였지. '물건의 하자를 책임지는 것(3문단)'과 '돈 떼일까 봐 확보해 두는 것(4문단)'.

→ 여기서 보증은 사람(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가)의 4문단(채권 실현 확보) 맥락의 담보구나.

→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 채무도 사라진다? 이건 당연한 인과 관계.

보증이 ①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고? [채권자 ↔ 보증인]이야. 주채무자는 빠져있네.

→ (가) 3문단에서 '유상 계약'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어.

→ 그런데 여기선 보증인만 빚을 지고 채권자는 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라서 유상 계약이 아니구나. ((가)에 제시된 용어 정의 끝고 와서 붙여 읽기)

⑦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왜 마찬가지지? 아까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 ↔ 보증인]이라고 했으니까.

→ 주채무자가 보증인한테 돈을 주는 건 지들끼리의 별도 사정이고, 보증 계약(채권자↔보증인) 자체 안에서는 오가는 대가가 없으니까 여전히 유상 계약이 아니라는 거구나. 논리 깔끔하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니, 보증 계약이라는 키워드만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로 범주가 이동한다.

→ 어떻게 법적 규제를 해야 보증인 보호를 할 수 있지? #능동적 독해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sup>1</sup> /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sup>2</sup>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sup>3</sup>이지만 /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sup>4</sup>

→ 민법에 의한 법적 규제를 언급하며, 그 세부적인 조건 4가지가 나열된다. 넘버링하며 확보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sup>1</sup>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sup>2</sup>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 새로운 케이스다. 구분해줘야 한다. 1과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문단 독해]

보증의 정의와 성격

- 정의: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타인이 대신 갚는 것

- 당사자 : 채권자↔보증인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님)

- 특징 1 : 주채무 소멸 →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

- 특징 2 : 유상 계약이 아님

- 이유: 보증인만 의무를 지고, 채권자는 대가를 주지 않음.

- if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돈(대가)을 주기로 따로 계약했다면? → 그래도 보증 계약(채권자↔보증인) 자체는 여전히 대가 교환이 없으므로 무상임.

[2문단 독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1. 민법 (기본 규제)

- 원칙: 계약서 작성 + 서명/날인 필수

- if 위반 시 → 보증 계약 무효

- 예외: 이미 보증 채무를 이행해버린 경우  
→ 무효 주장 불가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가 보호)

- 적용 조건 (AND)

1. 주채무가 사업과 무관할 것
2. 대가 없는 호의로 보증 섰을 것

- 보호 효과: 간주 규정 적용 (ex. 기간 명시 없으면 3년으로 간주)

###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담보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 새로운 케이스다. 구분해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앞 문단에서 제시된 민법에 의한 보증 계약 4가지 조건은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건 기본이다. 여기에 추가로 앞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 더해지는 것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러한 경우,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재산 증명)"라고 텁길 수 있구나. 방어권이 있네. #능동적 독해 : 현재 우리는 "어떻게 법적 규제를 해야 보증인 보호를 할 수 있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연대 보증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언급되네. 특약을 맺으면 방어권이 사라져. 채권자가 주채무자 안 거치고 바로 나한테 와도 할 말이 없네. 훨씬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거지..?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어! 이 법 앞에서 봤는데. 드디어 왔다. (가) 지문의 핵심(해석 방법의 차이)을 여기에 써먹겠구나.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④규정하고 있으나

→ 문리 해석에 해당한다.

- 법조문 글자 그대로 보자.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써있네?

- 근데 아까 3문단에서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 안 했는지 따지기도 전에 채권자가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었잖아?

- 그럼 문리 해석상으로는 연대 보증인은 이 법조문에 딱 들어맞지 않아서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입법 과정'? 이건 (가) 2문단의 '역사적 해석'이잖아.

→ 만든 사람들의 의도(입법 과정)를 보니 연대 보증인도 보호하려고 했대.

→ [결론 도출] 아하!

- 글자 그대로(문리 해석) 보면 연대 보증인은 보호 못 받을 수 있는데,  
- 만든 의도(역사적 해석)를 따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 그래서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첫 문장에서 말했구나.

###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 [1-2문단 독해]

##### 보증의 정의와 성격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 1. 민법 (기본 규제)

- 원칙: 계약서 작성 + 서명/날인 필수
- if 위반 시 → 보증 계약 무효
- 예외: 이미 보증 채무를 이행해버린 경우  
→ 무효 주장 불가

#####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가 보호)

- 적용 조건 (AND)
  1. 주채무가 사업과 무관할 것
  2. 대가 없는 호의로 보증 섰을 것

- 보호 효과: 간주 규정 적용 (ex. 기간 명시 없으면 3년으로 간주)

#### [3문단 독해]

일반 보증 vs 연대 보증 (권리의 차이)

##### 1. 일반 보증인

- 상황: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안 가고 보증인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함.
- 대응: 거절할 권리 있음  
- 조건: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 2. 연대 보증인

- 정의: 보증 계약에 '연대 보증 특약'이 포함된 경우
- 핵심: 거절할 권리포기한 상태
- 결과: 채권자가 주채무자 안 거치고 곧바로 전액 청구하더라도? → 거절 불가 (무조건 갚아야 함)

#### [4문단 독해]

연대 보증인과 법 해석의 충돌 ((가) 지문의 적용)

쟁점: 연대 보증인도 '특별법'의 보호 대상인가?

- 법조문 (제2조):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됨.

- 해석의 갈림길

##### 1. 문리 해석 (글자 그대로)

연대 보증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따지기 전에 청구 가능함. → 법조문 문구와 딱 맞지 않음 → 보호 대상 아닐 수도?

##### 2. 역사적 해석 (입법 과정 고려)

입법 당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 → 취지를 고려하면 보호 대상 맞음.

결론: 어떤 해석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짐.

## STEP 04.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했다.

### 4.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지문 (가) 분석〉

- 1문단에서 법 해석의 출발점인 ‘문리 해석’을 제시합니다.
  - 2문단에서는 문리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언급하며 해석의 방법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후 ‘담보’라는 예시를 통해 이러한 해석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 따라서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라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지문 (나) 분석〉

- 1문단에서 보증 계약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설명합니다.
  - 2문단에서는 「민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방식과 보호 규정을 설명합니다.
  - 3문단에서는 보증인의 권리와 연대 보증 특약에 관한 내용을 다릅니다.
  - 이는 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원칙(규범)들의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열거)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5.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 지문 확인 (3문단)

-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 “목적물이...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 논리적 오류 분석 (인과관계 왜곡):

- 지문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 가치가 떨어지면(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후 처리(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선지는 '값어치가 일치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성립 요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합의)'으로 체결되는 것이지, 객관적 가치가 기계적으로 딱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1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기로 합의해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 [오답 풀이]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해설:

(가) 1문단: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일상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 일치함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 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 해설:

(가) 4문단: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일치함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 해설:

(가) 4문단: 일반 채권자는 비례하여 배당받지만,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우선 변제권) → 순위에 영향을 줌 → 일치함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 해설:

(가) 2문단: 문리 해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치함

## 6.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논리적 도출 과정:

1. (가) 문단 3 [정의 확인]: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계약을 맺은 A와 B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나) 문단 1 [당사자 확인]: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주채무자는 이 계약의 제3자입니다.)

3. (나) 문단 1 [상황 분석]: 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채무를 지는 대신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는 대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상 계약이 아닙니다.

4. [⑦의 상황 적용]: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대가(수수료)를 줍니다. 하지만 주채무자는 '보증 계약(채권자 ↔ 보증인)'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5. [결론]: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여전히 보증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대가는 계약 밖의 인물(주채무자)이 주는 것이므로, 보증 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의 교환이 없어 유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오답 풀이]

①: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는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으며, ⑦의 논리와 무관합니다.

③: 보증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것(구상권)은 사후 처리 문제이지, 계약 시점의 성격(유상/무상)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가 아닙니다.

④: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왜 유상 계약이 아닌가'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상 계약 여부는 '쌍방이 대가를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⑤: 보증의 기능(담보)을 설명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간의 대가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7. 정답: ⑥

### [정답 풀이]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지문 근거 (나) 1문단: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 논리적 판단:

- 연대 보증인도 본질적으로는 '보증인'의 한 종류입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어(채권 실현) 주채 무가 사라지면, 보증의 성질(부종성)에 따라 보증 채무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 이미 빚이 갚아졌는데 보증인이 또 갚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입니다.

### [오답 풀이]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 이어야 한다.

**해설:** (나) 2문단: 이 조건(호의, 무대가, 사업 무관)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이지, 연대 보증인의 정의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연대 보증을 설 수도 있습니다(단지 특별법 보호를 못 받을 뿐).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나) 4문단: 제2조 문리 해석(글자 그대로 해석)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문리 해석상으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해석(입법 취지)'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해설:** (나) 3문단: 이것은 일반 보증인이 가진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입니다. 연대 보증인은 특약을 통해 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설:** (나) 1문단 & 3문단: 보증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연대 보증 특약도 '보증 계약에 포함' 되는 것이므로, 특약 역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 Tip : 출제자의 심리

출제자는 학생들이 '연대 보증인'이라는 특수한 개념에만 집중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보증의 성격(부종성: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도 없다)'을 깜빡하기를 기대합니다. 복잡한 개념 문제일수록 '기본 정의'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8.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보기〉 분석]

- 갑(채권자): 그림 파는 사람 (돈 받을 사람).
- 을(주채무자): 그림 사는 사람 (돈 낼 사람). 1,000만 원 안 갚음.
- 병(보증인): 을 친구. 공짜(호의)로 보증 서줌.
- 현재 상황: 갑이 병한테 "네가 대신 1,000만 원 내놔"라고 요구 중.

### 지문 근거 (나) 3문단:

"채권자가...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해설:

- 선지의 조건은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병은 일반 보증인입니다.
- 일반 보증인은 갑(채권자)이 을(주채무자)을 건너뛰고 바로 돈을 달라고 할 때, "을에게 재산이 있으니 거기서 먼저 받으세요"라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오답 풀이]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 해설:

(가) 3문단: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 책임의 내용이 손해 배상이므로, 권리가 없습니다. (적절)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 해설:

(가) 3문단: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논리적 대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환불(계약 해제)은 안 되고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해설:

(나) 2문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적절)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해설:

(나) 2문단: 민법상 보증 계약은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안 되거나 무효인 상태이므로, (나) 4문단의 '특별법 해석 논란'을 따질 필요도 없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적절)

### Tip : 조건의 변화 읽어내기

- ③번 선지는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가정했습니다.
- 이 순간 병은 (나) 지문 3문단 앞부분에 나오는 '일반 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일반 보증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절할 권리'가 살아있다는 점을 포착했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 9. 정답: ⑥

### [정답 풀이]

⑤ ⑥: 규정하고 → 바로잡고

#### 문맥 확인:

(나) 4문단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이라고 ⑥ 규정하고 있으나"

#### 단어의 의미 :

- 규정(規定)하다: 규칙이나 법령 따위로 내용을 정하다.  
(Define / Stipulate)
- 바로잡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  
(Correct / Rectify)

#### 해설:

- 해당 문장은 법률이 "보증 계약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바로잡다'는 틀린 것을 고친다는 뜻이므로, 법이 개념을 정하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만약 바꿔 쓴다면 '정하고' 혹은 '정의하고' 정도가 적절합니다.

### [오답 풀이]

① ②: 구성하는 → 이루는

#### 해설:

- 문맥: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 해설: 구성(構成)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 일정한 전체를 짜다'는 뜻입니다. 순우리말로 '이루다'와 맥락이 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이루는 구성원)

② ③: 고려하여 → 해아려

#### 해설:

- 문맥: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 해설: 고려(考慮)는 '생각하고 해아려 보다'는 뜻입니다. '해아리다' 역시 사정을 살피거나 짐작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① ④: 구성하는 → 이루는

#### 해설:

- 문맥: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 해설: 구성(構成)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 일정한 전체를 짜다'는 뜻입니다. 순우리말로 '이루다'와 맥락이 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이루는 구성원)

② ⑤: 고려하여 → 해아려

#### 해설:

- 문맥: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 해설: 고려(考慮)는 '생각하고 해아려 보다'는 뜻입니다. '해아리다' 역시 사정을 살피거나 짐작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③ ⑥: 파기하고 → 깨뜨리고

#### 해설:

- 문맥: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 해설: 파기(破棄)는 '깨뜨려(破) 버리다(棄)'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으로도 "계약을 깬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적절합니다.

④ ⑦: 성립하려면 → 이루어지려면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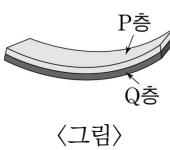
- 문맥: "보증이 성립하려면 ... 계약이 필요하다"
- 해설: 성립(成立)은 '일이나 관계 따위가 비로소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이루어지다'로 바꿔 써도 의미 변화가 없습니다.

## STEP 01. 직접 풀어보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①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



〈그림〉

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⑥ 돌아온다.

물체의 힘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힘 민감도이다. 힘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띠가 훨씬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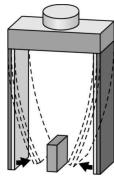
-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훙다.
-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온도  $T_0$ 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_1$ 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_0$ 에서  $T_1$ 보다 높은 온도인  $T_2$ 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 ②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 ③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 보다 짧겠군.
- ④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 ⑤ B와 달리,  $T_2$ 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훨씬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13. ①, ②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짹지어진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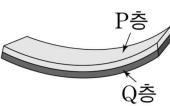
- ① ① ② ③ ④ ⑤
  - ① ① ② ② ③ ④ ⑤
  - ② ② ③ ③ ④ ④ ⑤
  - ③ ③ ④ ④ ⑤ ⑤
  - ④ ④ ⑤ ⑤
- ⓐ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 ⓑ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 곧 그에게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 ⓐ 그는 열심히 일해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 ⓑ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 ⓐ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우리 부서에 적은 돈이 뜻으로 돌아왔다.

## STEP 02. 있는 그대로의 시험지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①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



〈그림〉

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⑥ 돌아온다.

물체의 힘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힘 민감도이다. 힘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띠가 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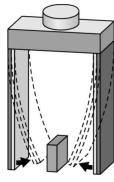
-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흔다.
-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온도  $T_0$ 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_1$ 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_0$ 에서  $T_1$ 보다 높은 온도인  $T_2$ 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 ②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 ③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 보다 짧겠군.
- ④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 ⑤ B와 달리,  $T_2$ 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훨씬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13. ①, ②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짹지어진 것은?

- ① ① ② ③ ④ ⑤
  - ① ① ② ② ③ ④ ⑤
  - ② ① ② ② ③ ④ ⑤
  - ③ ① ② ② ③ ④ ⑤
  - ④ ① ② ② ③ ④ ⑤
  - ⑤ ① ② ② ③ ④ ⑤
- ⓐ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 ⓑ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 곧 그에게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 ⓐ 그는 열심히 일해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 ⓑ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 ⓐ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우리 부서에 적은 돈이 뜻으로 돌아왔다.

## STEP 03. 이런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한다.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열팽창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오 이게 키워드인가? 일단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frac{\Delta \text{길이}}{\Delta \text{온도}}$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으로 나눈 값이다.

→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라고 말하며, 글의 진짜 핵심 키워드를 '열팽창'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로 좁혀준다.

→ 공식으로 정의가 제시된다. 저렇게 공식을 이루는 각 요소를 뒤어서 사칙연산 기호를 활용해 공식을 시각적으로 모델링 해주자.

여기에서  $(\Delta \text{길이}) = (\Delta \text{온도}) \times (\text{선형 열팽창 계수})$  (처음 길이)로 나누어 ①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 선형 열팽창 계수의 정의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구체화해준다. 붙여주면 된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sup>1</sup>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sup>2</sup>

→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나열한다. 이때, 양수라는 것을 보고 공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 변화량과 길이 변화량이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여야만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물질마다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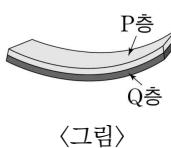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비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 첫 선형 열팽창 계수가 적용되는 예시로 1문단이 마무리된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공식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했어야 한다. "같은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인비는 알루미늄에 비해 적게 변하겠구나. 그리고 둘 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겠군."

,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 1문단에서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고 한 개념을 바로 가져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예시다. 앞 문단의 일반적인 설명에 지금부터 제시되는 예시를 붙여서 이해해야겠다.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 1문단에서 이해한 선형 열팽창 계수의 정의(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는 것은 '온도가 같은 양만큼 변할 때 길이가 더 많이 변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더 큰 Q층이 더 팽창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1문단 독해]

### 1. 열팽창의 정의

- 온도 변화 → 길이, 부피 모두 변화

### 2. 선형 열팽창 계수 (수치화)

- 정의:  $\frac{\Delta \text{길이}}{\Delta \text{온도}} = \frac{\Delta \text{길이}}{\Delta \text{온도}} \div \frac{\Delta \text{온도}}{\Delta \text{온도}}$

- 구성:

$$\text{길이 변화율} = \frac{\Delta \text{길이}}{\Delta \text{온도}} = \frac{\Delta \text{길이}}{\Delta \text{온도}} \div \frac{\Delta \text{온도}}{\Delta \text{온도}}$$

### 3. 물질별 특성

- 대부분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양수 (+)

- 물질마다 그 값이 다름

- 인바 (작음) vs 알루미늄 (큼)

[2문단 독해]

### 1. 상황 설정

- 물질 P(작음) + 물질 Q(큼) 접합

### 2. 메커니즘 (가설 시)

- Q(큼): 더 많이 늘어나려 함 (바깥쪽)

- P(작음): 덜 늘어남 (안쪽)

- 결과: 계수가 작은 P쪽으로 흡 (원의 호 형태)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⑥돌아온다.

→ 이것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다. 왜 P 쪽으로 훨까? Q는 많이 늘어나고 싶은데 P는 조금만 늘어나니까, P가 Q를 잡아당기는 셈이 된다. 따라서 팽창을 멀 하는 쪽(계수가 작은 쪽)으로 훨 수밖에 없다.

→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정보를 글로 설명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상상해 보며, 또는 손으로 직접 고적고적 시각적 모델링을 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림으로 직접 시각적 모델링을 한 것을 제시해서 더 이해하기 편했지만, 저렇게 그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었다.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 문단 초반부에서는 항상 그 문단의 범주를 파악하며 이전까지 누적된 문단에 붙여야 한다. 이 지문과 같이 특정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평서문의 형식으로 그때그때 제시하는 지문은 이 작업이 더더욱 중요하다.

→ 2문단이 '띠의 휨'이라는 현상을 설명했다면, 3문단은 앞 문단의 정보를 받아 "그 띠의 휨의 정도를 어떻게 수치화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 같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내는 방식을 구체화한다. N개 문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정보가 완성되므로, 하나의 호흡으로 읽었어야 한다.

→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직접 곡선을 그리면서 이해했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좁은 원) → "더 심하게 휘어진 것" (곡률이 큰 것)이다. 이 관계를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더 읽어 내려가 보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sup>1</sup> 온도 변화 가 클수록<sup>2</sup> 띠가 더 휘어진다.

→ 당연하다. 그러면 두 물질의 휘어짐 정도가 더 크게 차이 나겠지.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 새로운 용어가 정의됐다. 그런데, 앞서 1문단에서 이해했던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면 휨 민감도도 커지겠네.

→ 결국 3문단에서 확보한 정보는 세 가지였다.

1. '휨'은 '곡률'로 측정함 (곡률 = 1/반지름)
2. 휨(곡률)은 계수 차이와 온도 변화에 비례함.
3. 휨 민감도와 선형 열팽창 계수는 비례

### [1문단 독해]

#### 1. 열팽창의 정의

- 온도 변화 → 길이, 부피 모두 변화

#### 2. 선형 열팽창 계수 (수치화)

- 정의: (길이 변화율) ÷ (온도 변화량)
- 구성:  
길이 변화율 = (변화된 양) / (처음 길이)  
변화량 = (나중 값) - (처음 값)

#### 3. 물질별 특성

- 대부분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양수 (+)
- 물질마다 그 값이 다름
- 인바 (작음) vs 알루미늄 (큽)

### [2문단 독해]

#### 1. 상황 설정

- 물질 P(작음) + 물질 Q(큽) 접합

#### 2. 메커니즘 (기열 시)

- Q(큽): 더 많이 늘어나려 함 (바깥쪽)
- P(작음): 덜 늘어남 (안쪽)
- 결과: 계수가 작은 P쪽으로 휨 (원의 호 형태)

#### 3. 특징

- 온도를 내리면 원래대로 돌아옴

### [3문단 독해]

휘는 건 알겠다.

Q. 그럼 얼마나 많이 휨는데? 이걸 수치로 어떻게 나타내지? → 3문단으로 연결

#### 1. 휨의 척도

- 곡률 = 1 / 곡률 반지름
- 관계: 많이 휨 = 곡률 큼 = 반지름 작음

#### 2. 휨을 결정하는 3요소 (비례 관계)

- a. 두 물질의 계수 차이가 클수록
- b. 온도 변화가 클수록
- c. 휨 민감도가 클수록  
→ 더 많이 훙다.

###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 새로운 정보다. 4문단은 2문단과 3문단에서 구축한 '휘어지는 띠'의 원리를 '응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다. 이제 지금까지 확보했던 정보를 활용해서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정보를 이해해야겠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

→ 아 열을 가하면 움직이니까 맞는 말이네.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sup>1</sup>,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sup>2</sup>, 반응 완료 시간<sup>3</sup> 등이 고려된다.

→ 일단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보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을 나열하니까 넘버링은 했는데.. 이렇게 문단이 끝났네. 원가 짭짤한데 일단 액추에이터에 대해 확보한 정보 훌드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솔직히 어지간한 지문이면 아거 다음 문단에서 구체화해 준다. 어떻게 고려해서 액추에이터를 설계하는지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띠가 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 맞네 앞에 문단 구체화. 어떻게 각 요소를 고려해서 액추에이터가 설계되는지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독해해야겠다.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고정되지 않은 : 생략된 정보)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 어 이거 이제 두 번째 요소에 대한 구체화다.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앞 문장 재진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 어 이거 이제 세 번째 요소에 대한 구체화다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최대의 곡률에 도달하기까지' - 이렇게 앞에서 확보한 정보는 붙여서 선제적으로 확보해주면 좋다.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같은 맥락의 정보를 서로 다른 범주에서 뽑아서 그 둘을 합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 고수는,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 =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짧다. =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최대의 곡률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다. #정보의 연결

###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 [1문단 독해]

##### 1. 열팽창의 정의

##### 2. 선형 열팽창 계수 (수치화)

##### 3. 물질별 특성

#### [2문단 독해]

##### 1. 상황 설정

- 물질 P(작음) + 물질 Q(큽) 접합

##### 2. 메커니즘 (가설 시)

- Q(큽): 더 많이 늘어나려 함 (바깥쪽)
- P(작음): 덜 늘어남 (안쪽)
- 결과: 계수가 작은 P쪽으로 휨 (원의 호 형태)

##### 3. 특징

- 온도를 내리면 원래대로 돌아옴

#### [3문단 독해]

휘는 건 알겠다.

Q. 그럼 얼마나 많이 휨는데? 이걸 수치로 어떻게 나타내지? → 3문단으로 연결

##### 1. 힘의 척도

- 곡률 = 1 / 곡률 반지름
- 관계: 많이 휨 = 곡률 큼 = 반지름 작음

##### 2. 힘을 결정하는 3요소 (비례 관계)

- 두 물질의 계수 차이가 클수록
  - 온도 변화가 클수록
  - 힘 민감도가 클수록
- 더 많이 훙다.

#### [4-5문단 독해]

키워드 : 액추에이터

##### 1. 액추에이터의 개념

- 열에너지 → 기계적 동작 (변환 장치)
- 구조: 한쪽 끝 고정, 반대쪽 끝 이동

##### 2. 설계 시 고려 사항

- 최대 이동 거리
  - 조건: 방해하는 힘이 없을 때
  - 결정 요인: 띠의 길이에 비례 (길수록 많이 이동)
-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 특성: 힘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
  - 소멸 시점: 최대 이동 거리 도달 시 (= 힘 완료, 최대 곡률 도달) →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미는 힘도 없다.
- 반응 완료 시간
  - 정의: 온도 UP ~ 최대 거리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
  - 결정 요인: 띠의 두께에 비례 (얇을수록 → 시간 짧음 → 반응 빠름)

## STEP 04.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했다.

### 10.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휩이 빨리 완료된다.

#### 일치 - 정답:

5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휩이 완료되는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는 것은 곧 휩이 빨리 완료된다는 뜻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오답 풀이]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 불일치**

**해설:** 1문단 첫 문장을 보면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도 변화합니다.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 불일치**

**해설:**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입니다. 단순히  $(\text{나중 길이}) \div (\text{처음 길이})$ 가 아닙니다.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 불일치**

**해설:** 1문단 중간 부분에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양수인 물질이 더 많습니다.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 불일치**

**해설:** 4문단에서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선택지는 입력(열)과 출력(기계적 동작)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11.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훈다.

#### 논리: 반댓값 추론

- 전제: 2문단에서 온도를 올릴 때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Q)이 더 많이 늘어나서 바깥쪽이 되고, 작은 물질(P)이 안쪽이 되어 P(작은 쪽)로 훈다고 했습니다.
- 추론: 반대로 온도를 내리면(냉각),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Q)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변화율이 크므로 수축도 많이 함).
- 결과: 더 많이 줄어든 Q가 안쪽(짧은 쪽)이 되고, 덜 줄어든 P가 바깥쪽(긴 쪽)이 됩니다.
- 결론: 띠는 안쪽인 Q(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 쪽으로 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작은 물질 쪽으로 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오답 풀이]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 해설:

- 계수 =  $(\text{길이 변화율}) / (\text{온도 변화량})$
- 온도 변화량(+/-)인데 계수가(-)라면, 길이 변화율은(-)여야 합니다. 즉, 줄어듭니다. **(적절)**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 해설:

- 1문단에서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계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계수가 작으면 길이 변화도 작으므로 적합합니다. **(적절)**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 해설:

- 1문단 정의: 길이 변화율 =  $(\text{길이 변화량}) / (\text{처음 길이})$

- 문자(변화량)가 같은데 분모(처음 길이)가 크다면? 전체 값(비율)은 작아집니다. (적절)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해설:**

- 동일한 곡률 = 동일한 원의 호(반지름) 같음.
- 똑같은 원의 둘레를 따라가는데, 띠가 길면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 따라서 시작점(고정점)에서 끝점까지의 직선 거리(이동 거리)는 긴 띠가 더 큽니다. 5문단에서도 "최대 이동 거리는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적절)

#### TIP ) 이 문제의 핵심 : 반댓값 추론

"과학적 원리(팽창)는 항상 대칭적이다. '늘어남'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반드시 '줄어듬(수축)'의 상황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라."

#### 12. 정답: ①

##### [보기] 상황 파악]

###### 1.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생각: 3문단에 따르면 "계수 차이가 클수록 더 휘어진다"고 했어. 즉, 같은 온도로 올려도 b가 a보다 더 많이 훈다(더 많이 오므라든다)는 뜻이군. (휩 정도:  $b > a$ )

###### 2. "A(a 두 개)와 B(b 두 개)... T1에서 B만 잡을 수 있었다."

생각: 집게가 물건을 잡으려면 안쪽으로 많이 휘어야 해. B는 많이 휘어서 달았고, A는 덜 휘어서 아직 달지 않았다는 뜻이네. (휩:  $B > A$  확인)

###### 3.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생각: 온도를 더 높이니( $T2 > T1$ ) A도 더 많이 휘어서 결국 달았구나. 온도가 높을수록 휩이 커진다는 3문단 내용 확인

##### <보기> 생각의 정리

- 물질 특성 : b가 a보다 "더 잘 휘는" 재료다. (계수 차이 큼)
- 상황 : T1에서 B는 성공(많이 휩), A는 실패(덜 휩). T2(고온)에서는 둘 다 성공.
- 기본 원리: 온도 변화( $\Delta T$ )가 클수록, 계수 차이가 클수록 곡률(휩)은 커진다.

##### [정답 풀이]

① T0에서 T1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지문 근거:**

##### <5문단>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즉, 방해물 없이 끝까지 맘껏 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함)

##### <3문단>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즉, 온도 변화량이 클수록 최대 곡률이 커진다.)

**생각:**

- 문제에서 묻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물체를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힘 상태(최대 곡률)를 의미합니다.

2. T2는 T1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즉, 온도 변화량( $\Delta T$ )이 더 큽니다.
3. 온도 변화량이 클수록 띠는 더 심하게 휘려고 합니다.
4. 따라서 T2일 때의 '최대 곡률(자연 상태의 힘 정도)'이 T1일 때보다 당연히 더 큽니다. 이는 물질 a, b 모두에게 적용되는 물리 법칙입니다.

### [오답 풀이]

- ② T1에서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 해설:

- 상황: T1에서 B는 잡았고(많이 힘), A는 못 잡았습니다 (조금 힘).
- 개념: 많이 훈다 = 곡률 크다 = **곡률 반지름 작다**. (반비례)
- 판단: 덜 훈 A(a)는 곡률 반지름이 크고, 많이 훈 B(b)는 곡률 반지름이 작습니다.
- 결론: 선지는 a가 작다고 했으므로 반대입니다.

- ③ T1에서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 해설:

- 상황: A는 허공을 갈라 최대치까지 이동해서 멈췄고(못 잡음), B는 가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멈췄습니다(잡음).
- 가정: A의 이동 시간 = B의 이동 시간
- 초론: B는 가다가 중간에 멈췄는데도 A가 끝까지 가는 시간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B가 물체 없이 끝까지 (최대 이동 거리까지) 이동했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 정의: '반응 완료 시간'은 끝까지(최대 거리) 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 결론: B의 반응 완료 시간은 A보다 길어야 합니다. (선지는 짧다고 했으므로 오류)

- ④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 해설:

- 개념: 5문단 "띠가 훨수록... 이동 거리는 커진다."
- 팩트: b가 a보다 계수 차이가 커서 더 잘 휘는 물질입니다.
- 결론: 따라서 b의 최대 이동 거리가 더 큽니다. (선지는 a가 크다고 했으므로 오류)

- ⑤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힘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 해설:

- 개념: 3문단 "힘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 팩트: T1에서 B는 잡았고(민감하게 반응), A는 못 잡았습니다(둔하게 반응).
- 결론: 즉, b가 힘 민감도가 더 큽니다. (선지는 a가 크다고 했으므로 오류)

### TIP ) 이 문제의 핵심 : 같은 의미 다른 표현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는 표현을 '방해물 없이 최대로 휘었을 때(이론값)'로 번역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곡률 반지름과 힘의 정도가 반비례함을 잊지 않았는가?"

### 13. 정답: ①

#### [지문 속 문맥]

##### 1. ①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②얻는 값"

- 생각: 여기서 '얻다'는 공짜로 줍거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다.
- 핵심 속성: 수학적 계산이나 과정을 통해 '수치'를 구하다/ 산출하다.
- 유의어: 구하다, 산출하다.

##### 2. ⑤ "원래 모양으로 ⑥돌아온다."

- 생각: 띠가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는 상황이다.
- 핵심 속성: 변화되었던 상태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 유의어: 복구되다, 회복하다.

#### 기준 설정

- ⓐ: 계산하여 값(수치)을 구하다.  
ⓑ: 원래 상태로 회복하다.

#### [정답 풀이]

##### ⓐ: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수치)를 얻었다."

- 지문의 '값(수치)'를 얻다'와 정확히 호응합니다. 계산이나 실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뜻입니다. (일치)

##### ⓑ: "은퇴한 후 고향(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 지문은 '원래의 모양(상태)'으로, 선자는 '원래의 장소(곳)'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 엄밀히 따지면 '상태' vs '장소'의 차이가 있지만, '본래 있던 곳/상태로 되가다'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가장 유사합니다.
- 나머지 선지들의 ⑥가 완전히 다른 뜻(우회, 순환, 배당)이므로,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 [오답 풀이]

##### ②번:

- ⓐ "용기를 얻었다": 심리적인 것을 획득함. (지문: 수치 산출)  
ⓑ "차례가 돌아온다": 순서가 순환하여 오다. (지문: 원상 복구)

##### ③번:

- ⓐ "결과를 얻었다": 노력 끝에 성취하다. (지문: 수치 산출)

Tip: 넓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①번의 '근사치(수치)'가 훨씬 직접적인 짹입니다.

- ⓑ "먼 길로 돌아왔다": 우회하다. (지문: 원상 복구)

##### ④번:

- ⓐ "보람을 얻었다": 심리적 획득.  
ⓑ "모임이... 돌아온다": 주기적으로 시기가 닥친다.

##### ⑤번:

- ⓐ "자신감을 얻었다": 심리적 획득.  
ⓑ "몫으로 돌아왔다": 분배받거나 차지하게 되다.

#### TIP) 이 문제의 핵심 : 동사 밑줄 문제는 목적어를 보자.

"동사 밑줄 문제는 항상 '목적어'를 보라. '값을' 얻는 것과 '용기를'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다."

### [최종 구조화 요약]

이 지문의 구조는 [원리 → 모델링 → 응용]의 전형적인  
공학적 서술 구조입니다.

- 1문단~2문단 (원리) : 팽창 계수 차이 → 작은 쪽으로 힘.
- 3문단 (모델링) : 힘  $\propto$  (온도 X 계수차 X 민감도) / 곡률과  
반지름은 역수.
- 4문단~5문단 (응용) : 액추에이터 성능표
  - 거리  $\propto$  길이
  - 시간  $\propto$  두께 (얇아야 빠름)
  - 힘 : 다 휘면 사라짐.

## STEP 01. 직접 풀어보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

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핵심은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 ①
- 스트로슨 :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②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케네스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③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케네스 :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 ④
- 칸트, 스트로슨, 롱케네스 :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 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① 롱케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⑤ 롱케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STEP 02. 있는 그대로의 시험지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

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핵심은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 ①
- 스트로슨 :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②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케네스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③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케네스 :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 ④
- 칸트, 스트로슨, 롱케네스 :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 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① 롱케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⑤ 롱케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STEP 03. 이런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한다.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 첫 문장부터 용어 개념 정의했다.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1문단에서 제시된 용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 인격은 포괄적인 범주, 자아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 중 '나'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아지를 생각하면 쉬운데, '나'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 '개똥이'라 하자. 일반적으로 '강아지'라는 동물이 있고, 그 중 '나'가 키우는 강아지를 '개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 첫 문장에서 주어진 용어가 키워드가 되어,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 여기서 '모든'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동일성이 모든 생각의 기반이라고 한다. 바로 이어서 예시를 주기에 더 이해하기 쉽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 이제 '인격의 동일성'의 설명에 대해 제시한다. 결국 이에 대한 견해가 이 글의 핵심.

→ 통사적 표현이 나오면 항상 큰 범주로 묶어주자. 이는 목차 생성 도구다. 칸트 이전의 견해를 제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견해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칸트 이후 견해도 나올 수 있다.

→ 이때,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칸트 이전 견해에 대한 이해를 다지고 넘어갔어야 한다. 쉽게 이해하면, 영혼만이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단일한 인식의 주체(주관)라고 본 것이다. 이해가 힘들다면 그냥 글자 그대로 정보 처리만 하고 넘어가도 좋다. (내 몸은 늙어도 영혼은 그대로니까....)

→ 그리고 영혼이 곧 인격이라고 봤구나.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 다음 문단으로 가니, 이제 칸트의 입장이 나온다. 읽어보니 영혼설을 비판함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자기의식이라고 칭하고, 「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왜 역접이지..? 아직 칸트 이전 견해를 어떻게 까는건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영혼)」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 아 여기서 나오네. 근데 이걸 알려면 「생각하는 나」를 「영혼」이라고 입혀 읽었어야 한다. 위에서 칸트 이전 견해 제시할 때 영혼 앞에 수식어 형태로 정의 제시해줬었다.

→ 아 그러니까 앞 문장과 엮어서 이해해보면, 내가 생각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영혼」이라는 것이 실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고, 그냥 가능성 정도만 열어둘 뿐이라는 거네. 그럼 칸트는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구나.

[1문단 독해]

통사적 이격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 1. 개념 정의

- 인격: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 자아: 그중 「나」를 지칭
- 통사적 동일성: 과거의 나 = 현재의 나 (윤리적 책임의 근거)

### 2. 칸트 이전의 견해

- 핵심: 영혼 = 인격
- 논리: 「생각하는 나(영혼)」가 시간 속에서 변치 않고 지속됨.
- 결론: 영혼이 있으니 인격도 동일하다.

[2~3문단 독해]

칸트의 회의적 시각과 논리적 반박

### 1. 칸트의 입장 (2문단)

- 「나는 생각한다(자기의식)」의 성격: 인식을 위한 기능적 조건일 뿐임.
- 한계: 이것만으로는 「영혼이 실제로 있다 (실재성)」는 것을 보장 못 함.
- 결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 다음 문단 가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혼이 인격이라는 칸트 이전의 견해를 반박하겠네. 범주 잡혔으니 이제 어떻게 반박하는지 확인하려 들어가자.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생각하는 행위)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인격 : 스스로의 동일성 의식 / 영혼 : 자기의식을 함

BUT 그렇다고 영혼=인격은 도출 불가.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 '생각하는 나(영혼)는 생각한다(자기의식을 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인격과 영혼이 같지 않은 이유라고? 차분하게 이해해 보자.

### 1.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 (인격 쪽):

- 내용: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다."
- 의미: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인격)을 확인하는 의식이야. 즉, 여기서의 의식은 '대상의 실재성(진짜 있음)'을 보장해.

### 2.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 (영혼 쪽):

내용: "영혼은 생각한다(자기의식)."

의미: 이건 앞 문단(2문단)에서 칸트가 밀했지? '나는 생각한다'는 기능일 뿐, 그 주체(영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보장 못 한다고. 여기서의 의식은 단지 '생각이라는 기능/조건'일 뿐이야.

→ [논리적 결론: 다리가 끊어졌다] 결국 칸트의 말은 이거야. "인격은 '실재'가 보장된 놈이고, 영혼은 '실재'인지 불확실한 놈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 = 인격'이라고 통 칠 수 있겠어?"

중간에 끼어있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A(실재함)와 B(실재 불확실)로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전제를 합쳐도 '영혼이 곧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 없다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 것이지.

#### □ 칸트의 논리 정리

- 전제 1: 인격 → 동일성 의식 (대상이 실재함 O)
- 전제 2: 영혼 → 자기의식 (대상이 실재함 ? - 안 할 수도.)
- 결론: 그러므로 영혼 = 인격? (X)
- 이유: 전제 1과 2의 '의식'은 실재성 여부가 전혀 다르므로 연결할 수 없다! 둘이 같은 말이려면 두 대상이 '의식'한다고 할 때 그 의식의 뜻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다르므로 둘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없다.

→ 이렇게 문장이 끝났다. 여기서 전체 범주에 대한 생각을 핵심 정보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해주면, 좀 찝찝한 감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의 핵심은 칸트가 칸트 이전의 견해를 까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견해가 이 글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영혼으로 인격을 설명하는 게 실패했으니, 칸트는 이제 "그럼 인격의 동일성은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해?"라는 의문이 들면 BEST. "이게 바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독해하는 '능동적 독해'다."

### [1문단 독해]

통시적 인격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 1. 개념 정의

- 인격: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 자아: 그중 '나'를 지칭
- 통시적 동일성: 과거의 나 = 현재의 나 (윤리적 책임의 근거)

#### 2. 칸트 이전의 견해

- 핵심: 영혼 = 인격
- 논리: '생각하는 나(영혼)'가 시간 속에서 변치 않고 지속됨.
- 결론: 영혼이 있으니 인격도 동일하다.

### [2-3문단 독해]

칸트의 회의적 시각과 논리적 반박

#### 1. 칸트의 입장 (2문단)

- '나는 생각한다(자기의식)'의 성격: 인식을 위한 기능적 조건일 뿐임.
- 한계: 이것만으로는 '영혼이 실제로 있다 (실재성)'는 것을 보장 못 함.
- 결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

#### 2. 논리적 오류 지적 (3문단 [A])

- 기준 주장: (전제1) 인격은 동일성을 의식함 + (전제2) 영혼은 자기의식을 함  
→ (결론) 영혼=인격
- 칸트의 반박: '의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름 (개념의 혼동)
  - 전제 1의 의식: 실재하는 대상을 의식
  - 전제 2의 의식: 그냥 생각한다는 기능
- 결론: 논리적으로 도출 실패.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이렇게 영혼으로 인격을 설명하는 게 실패했으니, 칸트는 이제 "그럼 인격의 동일성은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해?"라는 의문이 들면 BEST. "이게 바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독해하는 '능동적 독해'다. → 자, 이 생각을 끌고 내려와서 다음 문단을 읽어보자.

칸트는 통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주치는) 복수의 주관(인식의 주체)'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직접 증명하는 대신": 아, 앞 문단에서 영혼 증명에 실패했지? 그래서 칸트는 이제 '실체 증명'을 포기하는 거다. + 아 이거 핵심 정보 직결! 이제 칸트가 인격의 동일성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서술하겠다! 그거 확보하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자.

→ "가정이 반드시 선행": 이게 핵심이다. 인격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존재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있다고 치자(가정)"는 거다. 이걸 안 하면 논리 전개가 안 되니까.

→ "복수의 주관 → 동일한 인격": 시간마다 '느끼는 나(주관)'는 다를 수 있어(어제의 나, 오늘의 나). 하지만 이걸 하나의 '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뜻이군.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래야 ~ 가능하기 때문이다": 칸트가 왜 굳이 '가정'까지 하면서 이걸 살리려 할까?

→ "경험적 판단(과학/지식)": 어제 본 사과와 오늘 본 사과가 같다고 알려면, 보는 '나'가 같아야 한다. # TIP) 스스로 예시 만들어서 이해하기

→ "윤리적 판단(도덕/책임)": 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 벌을 받으려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 TIP) 스스로 예시 만들어서 이해하기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나는 / 배가 / 고프다'라는 생각을 하려 해도, '나는'을 떠올린 순간과 '고프다'를 떠올린 순간은 시간 차이가 있다.

→ "통서적으로 동일한 인격 필요": 어제 본 사과와 오늘 본 사과가 같다고 알려면, 보는 '나'가 같아야 해. # TIP) 스스로 예시 만들어서 이해하기

→ "윤리적 판단(도덕/책임)": 만약 앞 단어를 생각한 '나'와 뒤 단어를 생각한 '나'가 다르다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될 것이다. # TIP) 스스로 예시 만들어서 이해하기

→ 종합: 생각이란 파편들을 하나로 엮는 과정이고, 그 엮는 주체가 통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어야 생각이란 것 자체가 성립한다는 말이구나.

〈이해를 돋는 comment〉

"존재의 증명에서 기능적 필요성으로!" 칸트는 이제 "영혼이 진짜 있어?"라고 물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도덕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다. 생각이 이어지려면(구성),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인격)이 시간 속에서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필요성'을 역설한다.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1문단 독해]

통서적 인격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1. 개념 정의

- 인격: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 자아: 그중 '나'를 지칭
- 통서적 동일성: 과거의 나 = 현재의 나 (윤리적 책임의 근거)

2. 칸트 이전의 견해

- 핵심: 영혼 = 인격
- 논리: '생각하는 나(영혼)'가 시간 속에서 변치 않고 지속됨.
- 결론: 영혼이 있으니 인격도 동일하다.

[2-3문단 독해]

칸트의 회의적 시각과 논리적 반박

1. 칸트의 입장 (2문단)

- '나는 생각한다(자기의식)'의 성격: 인식을 위한 기능적 조건일 뿐임.
- 한계: 이것만으로는 '영혼이 실제로 있다(실재성)'는 것을 보장 못 함.
- 결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성을 열어둘 뿐.

2. 논리적 오류 지적 (3문단 [A])

- 기존 주장: (전제1) 인격은 동일성을 의식함 + (전제2) 영혼은 자기의식을 함  
→ (결론) 영혼=인격
- 칸트의 반박: '의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름 (개념의 혼동)
  - 전제 1의 의식: 실재하는 대상을 의식
  - 전제 2의 의식: 그냥 생각한다는 기능
- 결론: 논리적으로 도출 실패.

[4문단 독해]

칸트의 대안: 증명이 아닌 '가정'

1. 전략 수정

- 직접 증명(X) → 가정이 선행되어야 함(O)
- 내용: "복수의 주관이 하나의 인격으로 묶인다고 치자."

2. 가정이 필요한 이유

- 기능적 필요성: 그래야 경험적 판단(지식)과 윤리적 판단(도덕)이 가능하니까.
- 논리적 구조: 생각의 구성은 시간 흐름을 따르는데, 이걸 하나로 엮려면 통서적 인격이 필수임.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니, 새로운 사상가가 나오면서 칸트의 견해를 비판한다.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두 개 있다.

1. 스트로슨은 칸트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 방식을 어떻게 비판하는가?

2. 스트로슨은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생각하는 나(영혼)는 생각한다(자기의식을 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동의 하지만, 칸트의 핵심, 바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 논리’ 자체를 부정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 여기가 칸트와 스트로슨의 가장 큰 차이다. 바로 ‘신체를 고려했는지 여부’다.

→ “의식 + 신체의 복합체”: 스트로슨의 정의. 나(인격)는 유령이 아니라, 살와 뼈가 있는 존재라는 것.

→ 생각의 흐름: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을 보자. 우린 몸이 있잖아? 인격 = 마음 + 몸 이지.”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sup>1</sup>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sup>2</sup>

→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 스트로슨의 견해를 구체화한다.

→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나’가 먼저 있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속에서 ‘나’라는 개념을 뽑아냈다(추상화)는 뜻.

→ 생각의 흐름: “내 몸이 세상을 부딪치며 겪는 경험들이 진짜야. 그 경험들을 모아보니 ‘아, 이걸 겪는 내가 있구나’하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 /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 핵심 정보 직결. 인격의 동일성 근거는, 가정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 애초에 경험(신체)이 있어야 자아(자기의식)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 [1-4문단 독해]

통시적 인격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 1. 개념 정의

- 인격: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 자아: 그중 ‘나’를 지칭
- 통시적 동일성: 과거의 나 = 현재의 나 (윤리적 책임의 근거)

#### 2. 칸트 이전의 견해

- 핵심: 영혼 = 인격
- 논리: ‘생각하는 나(영혼)’가 시간 속에서 변치 않고 지속됨.
- 결론: 영혼이 있으니 인격도 동일하다.

#### 칸트의 회의적 시각과 논리적 반박

##### 1. 칸트의 입장 (2문단)

- ‘나는 생각한다(자기의식)’의 성격: 인식을 위한 기능적 조건일 뿐임.
- 한계: 이것만으로는 ‘영혼이 실제로 있다 (실재성)’는 것을 보장 못 함.
- 결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

##### 2. 논리적 오류 지적 (3문단 [A])

- 기준 주장: (전제1) 인격은 동일성을 의식함 + (전제2) 영혼은 자기의식을 함  
→ (결론) 영혼=인격
- 칸트의 반박: ‘의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의 혼동)
  - 전제 1의 의식: 실재하는 대상을 의식
  - 전제 2의 의식: 그냥 생각한다는 기능
- 결론: 논리적으로 도출 실패.

#### 칸트의 대안: 증명이 아닌 ‘가정’

##### 1. 전략 수정

- 직접 증명(X) → 가정이 선행되어야 함(O)
- 내용: “복수의 주관이 하나의 인격으로 묶인다고 치자.”

##### 2. 가정이 필요한 이유

- 기능적 필요성: 그래야 경험적 판단(자식)과 윤리적 판단(도덕)이 가능하니까.
- 논리적 구조: 생각의 구조는 시간 흐름을 따르는데, 이걸 하나로 페려면 통시적 인격이 필수임.

### [5문단 독해]

스트로슨의 비판: 신체와 경험의 강조’

#### 1. 칸트 비판

- 칸트의 ‘가정’ → 철학적 상상에 불과함.
- 문제점: ‘신체’를 빼먹음.

#### 2. 스트로슨의 대안

- 인격의 정의: 의식 + 신체의 복합체
- 인식의 순서 (칸트와 정반대)
  - 칸트: 자아 → 경험
  - 스트로슨: 신체/경험 → 추상화 → 자아
- 결론: 인격 동일성의 근거는 시공간 속의 경험(신체)이다.

###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니, 새로운 사상가가 나온다. 이전에 확보했던 두 사상가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보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스트로슨은 "경험 → 자아"라고 했었는데, 롱게네스는 "아니야, 자아(그릇)가 있어야 경험(물)을 담지!"라며 칸트의 견해와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 칸트와 다른 점이다. 철학적 논의의 범위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딱 잘라 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어서 구체화해준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sup>1</sup>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sup>2</sup>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 "도덕적 존재 = 자율성": 칸트가 인격의 동일성을 주장한 이유(도덕/책임)를 그대로 가져왔다.
- "선택 =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자율적 선택'을 하려면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선택지(경험)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생각의 흐름: "자, 도덕적이려면 자율적이어야 해(칸트). 근데 자율적 선택이란 게 뭐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현실에서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현실 속에 있어야지."
- # TIP) 스스로 예시 만들어서 이해하기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죽은 영혼은 짜장면을 자율적 선택할 수 없다.
- "기준은... 신체": 결국 논리의 출발은 칸트였지만, 그 논리가 실현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신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생각의 흐름: "결론은 이거다. '나(자아)'라는 논리적 주체가 먼저인 건 맞지만(칸트), 그 주체가 실제로 자율성을 지니려면 반드시 몸(신체)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증명하는 건 바로 나의 몸이다."

###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 [5문단 독해]

스트로슨의 비판: 신체와 경험의 강조'

##### 1. 칸트 비판

- 칸트의 '가정' → 철학적 상상에 불과함.
- 문제점: '신체'를 빼먹음.

##### 2. 스트로슨의 대안

- 인격의 정의: 의식 + 신체의 복합체
- 인식의 순서 (칸트와 정반대)
  - 칸트: 자아 → 경험
  - 스트로슨: 신체/경험 → 추상화 → 자아
- 결론: 인격 동일성의 근거는 시공간 속의 경험(신체)이다.

#### [6문단 독해]

롱게네스의 종합

##### 1. 칸트 편들기 (논리적 측면)

- 자아의 위상: 경험의 결과물(추상화)이 아니라, 성립 조건임.
- 즉, 논리적으로는 칸트 말이 맞음. (자아 → 경험)

##### 2. 스트로슨 요소 수용 (현실적 측면)

- 적용 범위 한정: 자아/인격은 '시공간을 사는 인간'에게만 적용됨.
- 도덕적 실현의 조건:
  -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을 실현하려면? → 현실에서 '선택'을 해야 함.
  - 선택을 하려면? → '살아 있는 신체'가 필수임.

##### 3. 최종 결론

- 인격 동일성의 기준 =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 (칸트의 논리적 주체 + 스트로슨의 물리적 신체 결합)

#### [최종 구조도 : 이 글의 목차]

1. [문제 제기] 인격의 동일성, 왜 중요한가?
2. [반박 1] 칸트의 파괴: "영혼 증명 불 가능하다." (논리적 오류 지적)
3. [대안 1] 칸트의 건설: "증명 대신 가정 하자." (사고와 윤리를 위해)
4. [반박 2] 스트로슨의 공격: "가정은 상상이다. 신체(경험)가 근거다."
5. [종합] 롱게네스의 결론: "자아(논리)가 우선이지만, 도덕적 선택을 위해선 신체 (현실)가 기준이다."

## STEP 04.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했다.

### 14.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 지문 근거 6문단: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 사고 과정:

- 롱게네스는 칸트의 '도덕성(자율성)'을 인정한다.
- 그 자율성이란 현실(시공간)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 선택을 하려면? 죽은 영혼은 못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살아 있는 신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결론: '선택'을 위해 '살아있음'은 필수 조건이다. 지문 내용과 완벽히 일치한다.

#### [오답 풀이]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근거 (2문단)]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 [왜 틀렸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불멸의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장한다'는 서술어는 칸트의 입장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근거 (4문단)]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 [왜 틀렸나?]

'독립적'이라는 말은 시간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생각이 t1, t2, t3...처럼 시간 순서대로 조립된다고 했습니다. 즉, 생각은 시간에 종속적입니다. 정반대 진술입니다.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근거 (5문단)]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 [왜 틀렸나?]

'자기의식 → 인식(경험)'은 칸트의 생각입니다. 스트로슨은 정반대로 '경험 → 자기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어를 잘못 연결한 함정입니다.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근거 (5문단)]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 [왜 틀렸나?]

매우 정교한 단어 바꾸기 함정입니다. 스트로슨이 강조한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텔레파시(의식)가 아니라, 눈과 손(신체)을 통해 세상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신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 Tip : 출제자의 심리

이 문제는 "각 철학자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연결했는가?"를 묻습니다.

칸트	논리가 우선 (생각 → 존재 가정)
스트로슨	현실이 우선 (신체/경험 → 자아)
롱게네스	논리는 칸트, 조건은 현실 (도덕적 선택 → 살아있는 신체 필수)

특히 5번 선지는 롱게네스가 두 입장을 종합하여 내세운 '현실적 필수 조건(신체)'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묻는 좋은 선지입니다.

## 15. 정답: ①

### [정답 풀이]

⑤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지문 근거 ([A])

- 전제 1: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 전제 2: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 칸트의 지적: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사고 과정:

1. [A] 부분은 칸트가 두 전제를 연결하여 결론(영혼=인격)을 내리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2. 반박의 핵심 근거는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쓰인 '의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3.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는 '실재성(진짜 있음)'을 포함 하지만, 두 번째는 '실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4. 따라서 ①번 질문(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인 '의식'이 실재성과 관련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답이 이 문단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 [오답 풀이]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왜 틀렸나? - “위치 불일치”]

이 내용은 4문단(칸트의 제안)에 등장하며, 이에 대한 반박(스트로슨)은 5문단에 나옵니다. 3문단 [A]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왜 틀렸나? - “내용 오류”]

칸트는 2문단에서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고, 3문단([A])에서도 전제들 자체는 “납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 도출된 ‘결론’을 부정했을 뿐입니다.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왜 틀렸나? - “내용 모순”]

칸트는 [A] 다음 문단(4문단)에서 직접 증명하는 대신 가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 [왜 틀렸나? - “지문 내용과 다름”]

지문은 두 전제가 다름없다고 진술하고 나서, 그것이 실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함의'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 둘이 같은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 문단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단의 핵심은 '의식'이라는 단어의 실재성 유무 차이를 밝히는 것입니다.

## 16.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스트로슨: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 지문 근거 (5문단)

-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 사고 과정(논리적 모순 발견):

- 선지의 주장: 경험적 인식  $\leftarrow$  (의존)  $\leftarrow$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자아가 먼저 있어야 경험이 가능하다.)
- 스트로슨의 실제 주장: 자아에 대한 인식  $\leftarrow$  (의존)  $\leftarrow$  경험적 인식 (즉, 경험이 먼저 있어야 자아 인식이 가능하다.)
- 해설: 스트로슨은 칸트가 "자아(자기의식)가 인식의 선행 조건"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스트로슨에게 자아란 경험들로부터 추상화되어 나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스트로슨이 아니라 칸트의 견해에 가깝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오답 풀이]

① 칸트: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 [근거 in 5문단]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 [해설]

칸트는 자아(생각하는 나)는 경험적 대상(물체)처럼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조건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③ 추상화 과정 (스트로슨 vs 롱게네스)

### [근거 in 5문단, 6문단]

스트로슨: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rightarrow$  추상화 과정 필수. (동의하지 않음 = 추상화 필요하다는 뜻. 적절함)

롱게네스: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rightarrow$  추상화 없이도(경험 이전에) 자아가 전제되어야 함. (동의함. 적절함)

④ 칸트, 롱게네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 [근거 in 6문단]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 [해설]

두 학자 모두 인간을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⑤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 [해설]

세 학자 모두 "시간이 흘러도 '나'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통시적 동일성)"는 개념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가정 vs 신체 경험 vs 도덕적 신체)를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를 거부한 학자는 없습니다.

### Tip : 문제 해결의 핵심 – 인과관계의 방향성

이 문제는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인과관계를 잘 확보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낸 문제입니다.

칸트	자아(원인) $\rightarrow$ 경험(결과)
스트로슨	경험(원인) $\rightarrow$ 자아(결과)

선지 ②번은 스트로슨의 이름표를 달고 칸트의 논리(자아가 원인)를 말하고 있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 17. 정답: ③

1단계 <보기> 분석 :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며 읽기

### 갑의 주장 분석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프로그램)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포함되어야 하거든."

### [독해 포인트]

- 핵심 주장: 의식(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몸(Body)이 있어야 인격이다.
- 지문 연결:

스트로슨	"인격은 신체와 의식의 복합체" (비슷함)
롱게네스	"살아 있는 신체가 있어야 도덕적 선택 가능" (아주 비슷함)
칸트 이전	"영혼(생각)만 있으면 됨" → (갑이 이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

### 을의 주장 분석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 [독해 포인트]

- 핵심 주장: 몸은 필요 없다. 기능만 똑같으면 인격이다.
- 지문 연결:

칸트	"가정이 선행되어야 함" → (을이 칸트를 반박함: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스트로슨/ 롱게네스	"신체가 필수임" → (을이 이들을 반박함: '신체가 없지만 동일함')

## 2단계 선지 분석

### [정답 풀이]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해설]

#### 1. 기준점(칸트 이전 견해) 확인

- 지문 1문단: "칸트 이전까지...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 즉, 이들은 "생각하는 나(영혼)만 있으면 인격 동일성은 OK!"라는 입장입니다.

#### 2. 대상(갑의 입장) 확인

- 보기의 갑: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 즉, 갑은 "생각하는 나만으로는 부족해! (NO)"라고 말합니다.

#### 3. 판단(충돌 여부)

- (칸트 이전): "야, 생각만 있으면 충분해."
- (갑): "아니야, 생각만으로는 부족해."
- 둘은 싸우게 됩니다. 칸트 이전 사람들이 보기엔 갑의 말은 틀린 말이죠.

#### 4. 결론

-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맞는 진술(True)!

### [오답 풀이]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 [왜 틀렸나? - "주장 왜곡"]

- 갑은 "프로그램은 인격일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가 갑의 주장을 정반대로 써놨습니다.
- (내용 검증): 롱게네스도 '살아 있는 신체'를 중시하므로, 신체가 없는 프로그램이 인격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왜 틀렸나? - "주장 왜곡"]

- 을은 "신체가 없지만... 동일한 인격이야"라고 했습니다. 즉, 신체가 없어도 인격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지가 을의 주장을 반대로 써놨습니다.

- (참고): 만약 선지가 제대로 쓰여서 "신체가 없어도 인격이 된다는 을의 입장은..."이라고 했다면, 스트로슨은 신체주의자니까 "옳지 않겠군"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왜 틀렸나? - "칸트와의 불일치"]

- 지문 4문단에서 칸트는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을은 "가정도 두지 않고..."라고 했죠.
-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을의 입장은 틀렸습니다(옳지 않겠군).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왜 틀렸나? - "롱게네스와의 불일치"]

- 지문 6문단에서 롱게네스는 자아와 인격을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봇 박았습니다.
- 을처럼 "인간과 상이한 존재(프로그램)도 기능만 같으면 OK"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롱게네스는 동의하지 않을 것(옳지 않겠군)입니다.

#### TIP ) 이 문제의 핵심

"주어(누구의 견해)와 목적어(누구의 주장)를 정확히 고정하고, 그들 사이의 O/X 관계를 따져라."

→ 이 문제는 보기에 나온 갑, 을의 주장 자체를 선지에서 교묘하게 뒤집어 놓거나(①, ②번), 학자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론을 연결(④, ⑤번)하는 함정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까고 있는지 정확히 도식화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